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05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

1. 개정이유

-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·특산물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우리군 인증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여 우리군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품질인증조례 「별표1」의 인증상표를 변경 개발된 인증상표로 사용하고 자 함.(제2조)

【인증상표 대비표】

현행(조례 제2조 별표1)	개정안(조례 제2조 별표1)
	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입법예고 : 실시(2006. 02. 24 ~ 03. 17)결과, 의견 제출사항 없음
- 다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없음
- 라. 신·구대비표 : 별첨

평창군 조례 제 호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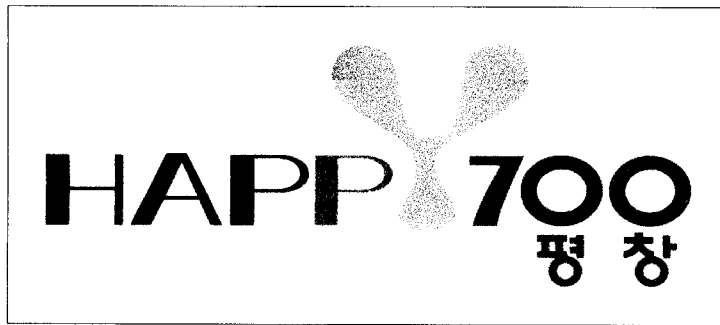
신·구조문대비표

“현 행”

【별표1】

평창군수품질인증상표(제2조관련)

1. 인증상표(가로×세로의 비율은 9.5×4.0)



2. 작도법

가. 크기 :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· 포장 · 용기의 크기 · 형태 · 주변의 도안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한다

나. 색깔 : H ~ DIC198p / C15% + M100% + Y100%

A ~ DIC148p / C60% + M80%

P ~ DIC182p / C100% + M50%

P ~ DIC162p / M50% + Y100%

Y ~ DIC170p / C40% + Y100%

700평창 ~ DIC653p / K60%

※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태 또는 색깔의 임의변경은 금지되며, 최소사용규정은 20mm임.

“개 정”

【별표1】

평창군수품질인증상표(제2조관련)

1. 인증상표



2. 작도법

가. 크기 : 표시하고자 하는 제품 · 포장 · 용기의 크기 · 형태
· 주변의 도안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로 표시한다.

나. 색상 : H ~ C15% + M100% + Y100%

A ~ C60% + M80%

P ~ C100% + M50%

P ~ M50% + Y100%

Y ~ C40% + Y100%

700 ~ K60%

- 인증마크 외곽 은색 ~ K30%

- 인증마크 외곽 연두색 ~ C40% + Y100%

- 글자색 ~ C30% + M50 + Y100%

※ 브랜드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태 또는 색깔의 임의변경은 금지되며, 색상재현은 인쇄시설, 잉크, 적용매체의 특성 및 재질 등에 의해 발색효과가 다르므로 항상 통일된 느낌의 색상재현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최소사용규정은 20mm임.

〈관계법령 발췌서〉

□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, 평창군수 품질인증 상표 (이하 “인증상표”라 한다)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,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평창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평창군수 품질인증 농특산물”이라 함은 평창에서 생산한 농산물·축산물·수산물·임산물(이하“농수산물”이라 한다) 및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·가공한 가공·전통식품으로서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한 것을 말한다.
2. “인증상표”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,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, 그 모양과 규격은 「별표1」 과 같다.
3. “인증상표 사용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.
4. “품질관리원”이라 함은 인증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